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3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개정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이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기준안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법령 및 조항, 문구 등을 신법에 맞게 수정(안 제1조・제3조・제4조 및 제5조)

나. 조례에 적용하는 재난의 범위(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에 황사와 적조를 추가(안 제2조).

다. 법에 의거 경기도지역본부장이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해 극심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

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지역본부장이 재난발생 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공고기간 : '05. 11. 7~11. 25

○ 예고방법 : 도보, 경기넷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해극심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재해극심지원조례” 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로 하며, “경기도재해대책본부장”을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를 “대응·복구”로 한다.

제2조 중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를 “ 가뭄・지진・황사 및 적조 등”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응급대책”을 “재난응급대책”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방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하며, “재해응급대책”을 “재난응급대책”으로 한다.

제4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및 제49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로 하고, “재해지역의 재해응급대책”을 “재난지역의 응급대책”으로 하며, “재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재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하며, “공무원이”를 “공무원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해극심지역의 선포 및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극심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하고, “재해를”을 “재난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재해극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재해발생”을 “재난발생”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의 “재해복구사항”을 “재난복구사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본부장이 재난발생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경기도재해극심지원조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취하는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및 피해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도내 각급 자치단체간의 행정응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자연재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자연재난 ---------- 대응・복구 ---------- ---------- ---------- ---------- ----------.	관련 법 개 정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규정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 ----------・황사・적조 등 ---- ----------.	
제3조 (재해응급대책) 본부장은 관계 법령 및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2. 의료 및 방역활동 3.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4. 급수 수단의 확보 5. 기타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재난응급대책) ---------- ---------- 안전관리계획---- ---------- ---------- ---- 재난응급대책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4조 (행정응원 등의 지시 및 요청) ①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지역의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재해지역 외의 시·군 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응원 등의 지시 및 요청) 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재난지역의 응급대책---------- 재난지----------.----------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군 방재책임자에게 재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공무원이 투입과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받은 해당 시·군의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 재난지역의 ---------- 공무원의 ---------- ---------- ---------- ---------- -- .	
제5조 (재해극심지역의선포및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①본부장은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경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재해극심 지역(이하 “재해극심지역”이라 한다) 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5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①〈삭제〉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재해를 수습하는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지방비(시·군비) 부담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 재난을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재해극심지역에 대하여 본부장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히 추가지원할 수 있다.	③특별재난지역에 ---------- ---------- ---------- ---------- ---------- ----------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재해발생 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재난발생 ----------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지원할 때 본부장은 시·군 방재 책임자에게 기타 재해복구사항에 대한 상세지원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 ----------재난복구사항에 ---------- ----------.	
〈신설〉	제6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본부장이 재난발생 시점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